

서울특별시      광진구  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 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

2015년 10월 30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80호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부터 제5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자로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을 “사람으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단체설립”을 “단체 설립”으로 하고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“국가보훈처소관”을 “국가보훈처 소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 중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9조의2 중 “제3조제1호에 따라 희생·공헌자가”를 “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·공헌자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원대상자가 국가 또는 다른 조례(서울특별시 조례 포함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0조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## 《신 · 구조문 대비표》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	1.“희생·공헌자”라 함은 ----- 2.“국가보훈대상자”라 함은 ----- 3.“국가유공자”라 함은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<u>자로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. 4.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라 함은 ----- 5.“단체”라 함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「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-----	제3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	1.----- <u>란</u> ----- 2.----- <u>란</u> ----- 3.----- <u>란</u> ----- ----- <u>사람으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</u> - ----- 4.----- <u>란</u> ----- 5.----- <u>란</u> 「국가유공자 등 <u>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「 <u>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</u> -----	
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	이 조례에 <u>의한</u> 예우 및 지원대상은----	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	----- <u>따른</u> -----	
제8조(단체 예산지원)	구청장은 국가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<u>범위안에서</u> 다음과 같이-----	제8조(단체 예산지원)	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	
제9조(생업 및 복지의 지원)	구청장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----- 예산의 <u>범위안에서</u> 다음과 -----	제9조(생업 및 복지의 지원)	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	
제9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)	구청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 <단서 신설>	제9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)	-----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·공헌자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----- ----- <u>다만, 지급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(서울특별시 조례 포함)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</u>	
제10조(지원신청 및 보고)	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<u>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</u>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-----	제10조(지원신청 및 보고)	제8조에 따라 ----- 「 <u>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</u> 」에 따라 -----	
제12조(시행규칙)	이 조례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-	제12조(시행규칙)	----- <u>시행에 필요한</u> -----	